

◎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3-98호

「통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「통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통계이용자에 대한 식별형태 통계자료 제공 범위 확대(안 제47조)
현재 총조사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서 사업체명, 업종, 주소, 전화번호만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통계자료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

나.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(안 제52조의4)
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다.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(안 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)
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할

수 있도록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 ‘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’로 명확히 하고,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함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(참조: 통계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3동 1407호 통계정책과
- 전자우편 : lhb0314@korea.kr
- 팩스 : 042-481-2462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(www.kostat.go.kr)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, 통계청 통계정책과(전화 042-481-2426, 팩스 042-481-24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3항 중 “상호·업종·주소 및 전화번호”를 “상호·업종·주소·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”로 한다.

제5장에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4(민감정보의 처리)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3.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사무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

2.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
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“위반 횟수는”을 “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과태료 부과처분을 한”을 “처분을 받은”으로, “후에 같은 위반행위로”를 “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”로, “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”를 “기준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7조(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법 제31조제2항2호에서 “사업체 명, 업종,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사업체의 <u>상호·업종·주소 및 전화번호</u>를 말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7조(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 <u>상호·업종·주소·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</u>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2조의4(민감정보의 처리) ①</u> <u>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</u></p> <p>2. <u>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</u></p> <p>3. <u>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사무</u></p> <p>② <u>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</u></p> <p>2. <u>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</p> <p>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(법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조사의 주기가 1년 이상이면 3년간을 말한다)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<u>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이 경우 <u>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 <p>나. <u>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통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2732 (042) 481 - 2426